

초안(DỰ THẢO) 1 / 2026년 7월 27일자

## 식품안전법(개정)

「제203/2025/QH15호 결의」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충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원칙, 관리정책, 정보체계, 금지행위; 식품안전 확보에 있어 조직·개인의 권리와 책임;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 식품영업시설의 요건; 식품, 길거리 음식, 음식점, 집단급식소 및 학교, 수입식품·수출식품, 식품 광고 및 표시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식품 시험, 위해분석 및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수습; 식품에 대한 국가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이란 식품을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조리 및/또는 섭취하는 경우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매개질병"이란 병원성 인자에 오염된 식품을 먹거나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식품가공보조제"란 식품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비 또는 기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물질 또는 재료로서, 기술적 목적을 위하여 식품원료의 가공·생산 또는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며, 최종 제품에 잔류물 또는 유도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4. "식품가공"이란 전처리된 식품 또는 신선식품을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식품원료 또는 식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5. "식품제품 소유자"란 식품제품의 배합, 생산공정, 표준 또는 상표를 소유하거나 원산국 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소유자로 확인된 조직, 개인을 말한다.
6. "식음료 서비스 영업시설"이란 즉석 음식 및 조리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소규모 식품영업시설"이란 개인, 개인 집단 또는 가구가 시장·가정 또는 공공장소에서 식품을 가공·판매하

면서 가구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및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기업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8. "식품안전 확보 요건"이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안전한 식품을 보장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 제정한 식품, 식품영업시설 및 식품영업활동에 관한 기술적 규정과 그 밖의 규정을 말한다.

9. "식품향료"란 식품의 향미를 생성·조절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제품을 말한다. 향료에는 향미물질, 천연향료복합물, 열처리향료 또는 훈연향료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향료가 아닌 식품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향료에는 식품첨가물인 향미증진제와 단맛·신맛 또는 짠맛만을 내는 물질(설탕, 식초 및 식용소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향료는 직접 섭취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 "식중독"이란 독성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먹거나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급성 증후군으로서, 중독원인에 따라 위장관 증상, 신경학적 증상 또는 그 밖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1. "식품원료"란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처리만을 거친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식품 생산과정의 투입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식품 반제품을 포함하되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및 식품향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12. "식품오염"이란 오염물질이 식품 또는 식품환경에 침입하거나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3. "식품첨가물"이란 통상적으로 식품 자체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식품의 특징적인 구성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물질로서, 영양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산·가공·처리·충전·포장·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관능적 특성 개선을 포함한다)으로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하여 첨가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정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이 용어에는 오염물질 또는 식품의 영양적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14. "1차 생산"이란 재배, 축산, 수산양식, 채취, 어획, 채집, 도축 활동 중 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식품생산"이란 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재배, 축산, 수산양식, 채취, 어획, 채집, 도축, 전처리, 가공, 제조, 포장, 보관 활동 중 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식품 전처리"란 재배·축산·수산양식·채취·어획·채집·도축의 산물을 처리하여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신선식품을 만들거나 식품가공 단계에 사용될 식품원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7. "식품안전사고"란 식중독, 식품매개질병 또는 식품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18. "오염원인물질"이란 식품 또는 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았으나, 생산 과정(경작지 또는 축산농장에서의 수확 작업 및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공·준비·처리·포장·운송 또는 보관 과정의 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해당 식품 또는 사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이 용어에는 곤충 사체 조각, 설치류의 털 및 그 밖의 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식품"이란 가공·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씹고, 머금은 데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식품의 생산·가공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식품에는 의약품, 담배 및 화장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20. "사전포장식품"이란 포장과 표시가 완료되어 추가 가공 또는 즉시 섭취의 목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된 식품을 말한다.
21.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기술로 유전자가 변형된 하나 이상의 원료성분을 사용하거나 그 원료성분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2. "방사선조사식품"이란 식품의 오염을 처리·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으로 조사한 식품을 말한다.
23. "길거리 음식"이란 노점상이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즉시 섭취하거나 이후에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및/또는 진열·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24. "신선식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으로서 육류, 알류, 어류, 수산물, 신선 채소·과경·과일 및 그 밖의 미가공 식품을 말한다.
25. "이력추적"이란 생산·가공 및 유통의 특정 단계에서 식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법률 적용의 원칙

1. 베트남 영토 내에서의 식품영업활동은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이 법과 이 법 시행일 전에 공포된 다른 법률 사이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법 시행일 후에 공포되는 다른 법률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른 식품안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내용과 시행하지 아니할 내용, 그리고 해당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식품에 대해서는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법령 및 표준·기술규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상품 품질의 분류 원칙 및 품질관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식품에 대해서는 표준·기술규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규정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4 조 식품안전 관리의 원칙

1. 식품안전의 확보는 모든 식품영업 조직·개인의 책임이다.
2. 식품영업은 요건이 부과되는 활동이며, 식품영업 조직·개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망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는 1차 생산, 재배, 축산, 채취, 어획, 채집, 도축, 가공, 영업, 시장 유통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식품영업의 전 과정에 걸쳐, 식품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위해분석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력추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한다.
4. 식품은 시장 유통 전 과정에 걸쳐 검사·감시된다. 시장 유통 전에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하여야 하는 일부 식품군의 경우, 생산 조직·개인이 공표하여 적용하는 표준은 그에 상응하는 기술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식품안전 관리는 명확한 업무분장·권한배분과 부처 간 협력을 기초로 하나의 창구로 통일되도록 보장한다.

6. 식품안전 관리는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7. 식품안전 관리는 식품안전 정보체계의 구축·운영·활용 및 이용을 기초로 한다.

#### **제 5 조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활용**

1. 식품안전 관리에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투명성, 이력추적, 식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보장하며, 디지털경제·순환경제 발전 및 국제적 통합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다.
2. 식품 분야의 행정절차 처리 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3. 시험, 위해분석, 사고의 예방·차단, 사고 수습 및 이력추적, 식품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제품의 회수·처리, 식품에 대한 검사 활동에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첨단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다.
4. 코드번호, 바코드, 이력추적, 전자라벨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망을 관리한다.
5. 검사, 시장 유통 후 검사, 감사(監査), 경보 및 위반행위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보관·분석한다.
6. 디지털 기술, 전자라벨, 코드번호, 바코드 및 이력추적체계의 활용은 데이터의 수집·보관·처리 및 공유 전 과정에서 데이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체계**

1.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체계는 데이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구축·운영·연계·활용·공유된다.
2. 식품영업시설은 영업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빠짐없이 보관하여야 하며, 정부가 정하는 식품안전 정보체계 연계 로드맵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범위, 식품영업시설이 보관하여야 할 정보 및 식품안전 정보체계와의 연계 로드맵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7 조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의 정책**

1.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전략을 수립한다.
2.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식품안전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국가 재원 및 그 밖의 재원을 사용하여 식품안전 위해분석에 필요한 과학연구 및 기술 활용에 투자하고, 역내·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실을 신설·개선하며, 기존 분석 시험실의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원료 생산지역, 농수산물품 도매시장, 산업적 규모의 가축·가금 도축시설의 구축 투자를 지원한다.
3. 식품영업시설이 기술을 혁신하고, 녹색농업·순환경제를 추진하며, 공급망과 이력추적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며, 식품에 필수 미량영양소를 강화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며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4. 식품영업시설이 식품영업 과정에서 우수농업관리기준(GAP) 및 그 밖의 선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5.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식품 분야의 상호 인정·승인에 관한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을 촉진한다.
6. 국내의 협회·단체·조직·개인 및 외국의 조직·개인이 식품안전 표준·기술규정 제정 및 시험 활동에 투자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7. 베트남조국전선, 정치·사회 단체, 업종별 협회가 기업 및 식품영업시설에 대한 감시에 참여하고, 위반행위 및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식품안전 담당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식품영업시설의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조치를 강화한다.
8. 안전한 식품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식품영업 조직·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영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교육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형식과 방식을 다양화한다.
9.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행정절차의 온라인 처리, 수출입 관리, 시험 및 이력추적, 식품안전 검사·감시, 신속경보, 국가 사고경보 등 국가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0. 식품안전 분야의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중 국가예산에 납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배정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수단·장비를 확충하고 현대화한다.

## 제 8 조 금지행위

1. 식품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
2.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출처·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
3. 허용 목록에 없는 식품첨가물·식품가공보조제·식품향료를 사용하거나, 허용 목록에 있으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출처·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식품영업활동에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4. 질병·전염병으로 폐사하였거나 원인 불명으로 폐사한 동물, 강제 폐기 대상 동물; 잔류농약, 중금속 또는 곰팡이독소가 허용 한도를 초과한 식물을 식품영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영업하는 행위:
  - 가)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하지 아니한 식품.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제외
  - 나) 상품 표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
  - 다) 해당 제조자의 적용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 라) 변질된 식품, 위조식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

마) 금지물질, 독성물질 또는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원인물질을 함유한 식품

바) 포장·용기가 안전하지 않거나 운반 과정에서 파손·찢어짐·변형되어 식품 오염을 일으킨 식품

사) 전염병 예방·방역을 위하여 영업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

아) 출처·원산지가 불분명하기한이 지난 식품

6. 식품 오염을 유발하는 운송수단 또는 유독물질을 운반한 후 세척·소독·제독을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식품 및 식품원료를 운반하는 행위

7. 식품 시험 결과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8. 식품안전사고의 현장 및 증거를 은폐·왜곡·삭제하는 행위 또는 식품안전사고의 발견과 수습을 방해하는 그 밖의 고의적 행위

9. 법령에서 정하는 감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행위.

10. 법령에 따른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가 없는 시설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의 사용권이 박탈된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행위, 또는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에 기재된 전문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11.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인의 이미지·장비·복장·명칭·지위·발언·기고문, 환자의 의견을 식품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12. 의료영양식품 및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제품의 광고 금지

13. 다른 식품영업시설 또는 소비자의 영업·소비 과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식품안전에 관한 허위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14. 도로, 인도, 복도, 공용마당, 공용통로 또는 공용 부대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길거리 음식을 영업하는 행위

## 제 2 장 식품영업시설의 권리와 책임

### 제 9 조 식품생산시설의 권리와 책임

1. 식품생산시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자신이 생산·공급하는 제품의 표준을 선택하고 공표하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조치를 선택하여 적용할 권리

나) 자신이 생산한 식품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의 회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식품영업 조직·개인에게 협조를 요구할 권리

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험기관을 선택할 권리

라) 법령에 따라 건의, 신고, 이의제기, 고발, 소송을 제기할 권리

마)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 2. 식품생산시설은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가) 생산 조직·개인이 공표하여 적용하는 표준을 준수하고, 식품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및 생산 과정에서 식품안전 확보를 준수하며, 자신이 생산한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나) 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따라 일정 함량의 미량영양소를 식품에 강화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

다) 상품 표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사항, 포장 및 식품에 첨부되는 자료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것

라) 식품생산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검사 절차를 마련할 것

마) 식품안전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상 위해 가능성과 그 예방 방법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적시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경고하며, 식품의 운송·저장·보관 및 사용에 관한 요건을 알릴 것

바) 식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공표한 적용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그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 식품의 이력추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 식품 검체 및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을 이행할 것

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을 회수·처리할 것. 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그 폐기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

자) 법률의 규정 및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감사·검사·위반행위 처리 결정을 준수할 것

차)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을 부담할 것

카) 식품 생산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통보할 것

타) 자신이 생산한 식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

파) 영업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충분히 보관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공할 것.

##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책임 외에, 식품생산시설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 3항에서 정하는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식품생산시설을 제외한 식품영업시설의 권리와 책임

#### 1. 식품영업시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식품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치를 결정할 권리

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의 회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식품을 생산·수입한 조직·개인에게 협조를 요구할 권리

다) 식품안전 검사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험기관을 선택할 권리

라) 법률에 따라 건의, 신고, 이의제기, 고발, 소송을 제기할 권리

마)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을 권리.

## 2. 식품영업시설은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가) 생산자가 정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및 영업 과정에서 식품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을 준수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나) 식품의 출처·원산지·표시사항 및 식품안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식품이력추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 식품검체 및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며, 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 규정을 이행할 것

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식품의 운반·보관·저장 및 사용 시 안전확보 요건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것

라)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식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

마) 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따라 일정 함량의 미량영양소를 식품에 강화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

바) 식품을 생산·수입하는 조직·개인으로부터 경고 정보를 받은 경우 식품의 안전상 위해가능성과 예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것

사) 식품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수입 조직·개인 및 소비자에게 알릴 것

아) 자신이 취급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또는 식품매개질병을 발견한 경우 즉시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즉시 수습할 것

자) 식중독 조사, 결과 수습,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의 회수 또는 처리에 관하여 식품 생산·수입하는 조직·개인 및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협조할 것

차)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감사·검사·위반행위 처리 결정을 준수할 것

카)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을 지급할 것

타) 자신이 취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식품안전이 상실된 경우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

파) 영업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충분히 저장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할 것

##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책임 외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하는 식품영업시설은 전자상거래

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소셜네트워크에 게시하는 각 제품별로 제품공표등록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정보를 게시할 것

나) 식품안전 요건 적합시설 인증서(있는 경우), 각 제품의 제품공표등록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에 관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소셜네트워크의 운영자에게 제공할 것.

#### **제 11 조 식품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법률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 식품 소비자는 위반행위 및 식품안전사고를 해당 지역의 식품 담당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신고할 권리를 가지며, 식품 관련 범죄를 고발·신고하고 형사소송법 및 관련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2 조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 조직의 책임**

1.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정확성·적법성·진실성에 대하여 법률상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2.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 용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가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생산되도록 보장한다.
3. 자신이 명의자로서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한 수입제품에 대하여, 식품·식품첨가물·식품향료·식품가공보조제·식품 용기·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소유자가 자발적 회수를 통보하거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권한 있는 기관이 회수 결정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인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시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한 식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6. 자신이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인 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7.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그 밖의 책임을 이행한다.
8. 적용표준 공표 정보를 제품의 표시사항, 포장, 첨부 자료 및 대중매체 또는 자신의 전자정보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조직·개인의 소재지에 게시한다.

#### **제13조 식품생산시설 또는 제품 소유자가 다른 조직에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인이 되도록 위임하는 경우의 권리와 책임**

1. 위임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책임을 진다.

2.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 용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가 식품안전을 위반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 제 14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 외에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진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별 제품을 게시하기 위하여, 이 법 제10조 제3항 나)호에 규정된 법적 서류를 판매자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2. 필요한 검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 제 3 장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

#### 제 15 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대상, 내용, 요건 및 형식

1. 조직·개인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를 제공받으며, 그중 다음의 대상을 우선한다.

가) 식품 소비자

나) 식품영업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

다) 신선식품 및 소규모 식품 영업을 하는 조직·개인,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주민

2.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과 법령의 정보 제공·홍보·보급

나) 식중독 및 식품매개질병 위해요인의 원인과 인지 방법, 식품안전사고의 예방·대응 조치

다) 안전이 확보된 식품영업의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식품의 회수 및 식품안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업소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정보

라)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어 유해물질이 된 식품원료, 식품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 식품향료에 관한 정보 및 위반행위 처리 결과

3.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명확하고, 간명하며, 실질적일 것

나) 전통, 문화, 민족적 정체성, 종교, 사회윤리, 신앙 및 풍속·관습에 부합할 것

다) 홍보 대상의 유형별로 적합할 것.

4.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안전에 관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을 통한 수행

나) 대중매체를 통한 수행

다) 대중매체 및 소셜네트워크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기 홍보 프로그램의 구성

라) 국민교육체계에 속한 교육기관의 교수·학습에의 통합

마) 문화활동, 지역사회 활동, 단체·사회조직의 활동 및 그 밖의 대중문화 형태를 통한 수행.

5. 보건부의 식품안전 질의응답 창구를 통한 수행.

#### **제 16 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책임**

1. 기관·조직·단위는 그 임무와 권한의 범위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책임을 진다.
2. 보건부장관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사실과 다른 정보에 적시에 대응할 책임을 진다.
3.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중매체 기관으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홍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홍보 프로그램을 다른 정보·홍보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진다.
4. 교육훈련부장관은 보건부장관과 협력하여 다른 교육 내용과 결합한 식품안전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주관할 책임을 진다.
5.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식품안전 정보·교육·홍보 업무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을 진다.
6. 대중매체 기관은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를 위하여 방송 시간 대와 방송 시간을 우선 배정할 책임을 지며, 인쇄매체·영상매체·전자매체에의 게재 분량과 위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안전 정보·교육·홍보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사업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하거나 국내 조직·개인 또는 외국 조직·개인이 후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베트남조국전선, 각 단체 및 사회조직은 그 책임 범위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의 책임을 진다.

### **제 4 장 식품에 대한 일반적 안전확보 요건, 수출입 식품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식품 광고 및 표시**

#### **제 1 절 식품에 대한 일반적 안전확보 요건**

#### **제 17 조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1.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품공표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적용표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규정, 생산 조직·개인이 공표한 표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 및 안전 한도를 충족하도록 보장

다) 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장

2. 이 조 제1항의 규정 외에,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신선식품 및 동식물에서 유래한 신선식품으로 만든 식품원료는 수의,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

나)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은 그 효능과 사용량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식품영업 요건을 갖춘 업소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그 밖의 관련 식품안전 규정을 충족

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에 관한 규정을 준수

라) 방사선조사식품은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허용 식품군 목록 및 식품에 대한 조사 허용 선량에 속하여야 하며, 방사선 조사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

마)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원료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고유한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식품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상호작용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산물을 생성해서는 안 됨

바) 식품영업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는 식품영업에서 사용이 허용된 목록에 속하여야 하며, 보건부장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되어야 함

사) 수확·어획·채취·도축 후의 식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베트남이 당사자인 국제협정·국제조약의 규정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한 동물용의약품·식물보호제 및 식품 오염원인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또는 식물보호제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국의 규정에 따르며, 생산국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름

#### **제 18 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1. 안전한 원자재로 제조되어 유해물질 및 이취가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기한 동안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해당 기술규정 및 기술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품공표등록증의 발급·갱신·변경, 적용표준 공표의 형식과 대상 및 제품공표등록·적용표준 공표 면제 대상**

1.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제품공표등록증의 발급·갱신·변경·보완

나) 적용표준 공표

다)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의 면제.

2.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 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식품 분류 원칙 및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 분류 원칙: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국제 관행, 실무적 근거 및 식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식품을 분류

나) 제품공표등록 대상은 다음 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제품의 기술적 특성이 의약품과 유사한 제형이면서 복합적인 성분체계(비타민, 무기질,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생리활성물질 등)를 포함하는 경우
- 천연 유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포함하고, 온도·습도·빛 등 환경요인에 대한 안정성이 낮아 성분 간 상호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고도의 제제기술 공정이 필요한 경우
- 영아, 어린이, 고령자, 질환자, 임산부 등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 적용표준 공표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전포장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재
- 건강 관련 권고를 표시하지 않는 보충식품.
-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표준 공표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 식품원료.

라)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가 면제되는 제품은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3.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생산시설

나) 식품제품소유자

다) 식품생산시설 또는 식품제품 소유자로부터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명의인이 되도록 위임받은 시설.

4.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른 갱신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갱신되거나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 갱신 거부, 제품공표등록증 사용의 일시 중단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까지 또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위험이 발견되거나 법적 서류의 위조가 의심되는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5. 제품공표등록증이 발급되었거나 적용표준이 공표된 식품에 제 7 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 21 조에 따라 변경·보완하여야 한다.

6. 기술규정이 있는 식품은 법령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하며, 표준·기술규정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적합성 공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식품표준은 최소한 해당 기술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부는 식품 기술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7. 제품공표등록증이 발급되었거나 적용표준을 공표한 대상에 다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가) 제품공표등록증이 발급된 식품의 배합성분, 기능성 성분의 함량 또는 중량, 제형, 효능, 섭취대상, 섭취량 또는 생산시설이 변경된 경우

나) 적용표준을 공표한 식품의 생산시설, 제품명 또는 성분이 변경된 경우

8.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 면제 대상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며, 시장 유통 과정에서 검사·감독을 받는다.

9.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절차가 면제되었던 제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시장에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 21 조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하여야 한다.

10. 정부는 이 조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 20 조 식품 유통에 관한 규정**

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제품공표등록증이 발급되었거나 적용표준을 공표한 식품.

2.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가 면제되는 식품.

3.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생산된 국내 생산 식품은 사용기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다.

4.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베트남 항구로 인도된 수입식품은 사용기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다.

5. 이 법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제품공표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적용표준 공표 서류가 접수기관의 전자정보 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식품. 다만, 이 법 제 59 조에 따른 회수 대상 식품은 제외한다.

## **제 21 조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권한·서류·절차 및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

1.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 서류 및 절차를 정한다.

가) 제품공표등록증의 발급·갱신·변경·보완

나)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접수·변경·보완

2.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또는 갱신일부터 5 년으로 한다.

## **제 22 조 제품공표등록증의 취소,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삭제**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공표등록증은 취소되고 적용표준 공표 서류를 접수기관의 전자정보 사이트에서 삭제한다.

가) 사용자의 건강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위해가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위반이 있는 경우

- 나) 제품공표등록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접수·처리 권한을 벗어나 제품공표등록증이 발급되거나 적용표준 공표 서류가 게시된 경우
- 다) 외국의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 해당 식품의 유통허가를 취소하거나 소재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게시된 정보를 취소한 경우
- 라) 위조 서류에 근거하여 제품공표등록증이 발급되거나 적용표준 공표 서류가 게시된 경우
- 마) 권한 있는 기관이 제품공표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조직·개인이 적용표준을 공표하는 근거가 된 서류 중 하나가 외국의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 바) 식품이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상의 주소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
- 사) 제품의 상표가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로 결론이 내려진 경우
- 아) 세계보건기구, 베트남의 권한 있는 관리기관 또는 식품 원산국이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 식품인 경우
- 자)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인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나 제품공표등록기관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 접수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차)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식품을 위조품, 저품질 제품 또는 금지물질 함유 제품으로 결론 내린 경우
- 카) 식품영업시설이 베트남에서 제품공표등록증의 자진 취소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삭제를 신청한 경우
- 타) 보건부장관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상실하게 하여 소비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 위반으로 식품영업 적합시설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2. 정부는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가) 제품공표등록증의 취소 및 접수기관의 전자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삭제에 관한 권한·순서·절차
- 나) 제품공표등록 접수증이 취소되고 접수기관의 전자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적용표준 공표 서류가 삭제된 이후의 식품 처리
- 다) 생산자 및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인인 개인·조직의 법적 책임

## 제 23 조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접수·처리 일시 중지

1.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은 식품안전 법령을 위반한 조직·개인의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접수·처리를 일시 중단한다.

2.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의 명의인인 조직이 식품안전 또는 상품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 년간 제품공표등록증의 발급·갱신 신청서류 또는 적용표준 공표 서류의 접수를 거부한다.
3. 정부는 제 1 항의 위반에 따른 서류의 접수·처리·게시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와 기간을 정한다.

## 제 2 절 수입식품

### 제 24 조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및 국가검사

1. 수입식품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하는 식품안전 확보 요건 및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수입 전에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가 면제되는 식품은 제외
  - 나) 이 법 제25조 1항에서 정하는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각 화물별로 적합 판정 결과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식품에 대한 국가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식품안전 인증 활동에 관한 상호 인정 국제조약을 베트남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으로서 해당 조약이 베트남의 규정과 다른 식품 국가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보가 있거나 베트남 식품안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부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및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 25 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의 방식 및 순서·절차

1.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는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 가) 엄격검사
  - 나) 통상검사
  - 다) 완화검사
2. 정부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가) 식품안전 위해 수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 방식의 적용, 검사 방식 간의 전환 및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의 처리 조치
  - 나)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의 서류 및 절차
  - 다)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에서의 수입식품 국가검사 서류 및 절차
  - 라)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국가·영토 및 식품영업시설의 등록 절차

### 제 3 절 수출식품

#### 제 26 조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1. 베트남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계약 또는 관련 국가·영토와의 적합성평가 결과 상호 인정에 관한 국제조약·국제협정에 따라 수입국의 식품안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 27 조 수출식품에 대한 증명

1. 베트남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출식품에 대하여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정부는 수출식품에 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일시 중지·취소에 관한 권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한다.

### 제 4 절 식품의 광고 및 표시

#### 제 28 조 식품광고

1. 식품의 광고는 광고에 관한 법령의 규정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정부는 광고 내용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식품, 사용 과정에서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권고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 광고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및 광고내용확인서의 발급·취소에 관한 권한·서류·순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 29 조 식품표시

1. 베트남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원료 및 식품향료를 생산·수입하는 조직·개인은 상품 표시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식품 표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5 장

### 제 1 절 식품영업의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일반 요건

#### 제 30 조 식품영업시설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식품영업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식품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법적 서류, 기술 자료, 물적·기술적 시설 및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
  - 나)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유지하고, 식품원료의 출처·원산지에 관한 서류 및 식품영업 전 과정에 관한 그 밖의 자료를 보관할 것
  - 다)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의 건강, 지식 및 실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 제 31 조 식품 보관에 있어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식품영업시설은 다음의 식품 보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식품 보관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물적·기술적 시설을 완비할 것

나) 식품영업 조직·개인의 보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할 것.

2.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32 조 식품 운반에 있어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식품을 운반하는 조직·개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식품 운반수단은 식품 또는 식품 포장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세척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할 것

나) 영업 조직·개인의 지침에 따라 운반 전 과정에서 식품 보관 요건을 확보할 것

다) 식품을 유해물품 또는 교차오염을 일으켜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과 함께 운반하지 않을 것.

2.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은 식품 운반수단 및 도시 지역에서 일부 신선식품에 대한 식품 운반 경로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 33 조 소규모 식품영업에 있어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소규모 식품영업시설은 다음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식품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법적 서류 및 물적·기술적 시설을 갖출 것

나) 식품영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건강, 지식 및 실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다)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유지하고, 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할 것.

2.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2 절 신선식품 생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 제 34 조 신선식품 생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신선식품 생산시설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작지, 수원, 생산 장소에 관한 요건을 확보할 것.

2. 종자·종축의 사용, 비료, 사료, 농약, 동물용의약품, 성장촉진제, 증체제, 발육촉진제, 식품보존제 및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동물의 도축에 있어 검역·수의위생에 관한 규정 및 재배 산물에 대한 식물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4.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시행할 것.

5. 사용하는 세척제, 살균제, 소독제는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안전이 확보된 것일 것
6.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유지하고, 식품원료의 출처·원산지에 관한 서류 및 신선식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그 밖의 자료를 보관할 것

#### **제 35 조 생산업소를 제외한 신선식품 영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신선식품 영업소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 제18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식품의 보관·운반에 있어 안전확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영업 장소의 위생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절 식품의 전처리·가공 및 가공식품 영업에 있어 식품안전 확보 요건**

##### **제 36 조 식품 전처리·가공시설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이 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처리·가공 공정은 식품이 교차오염되거나 오염요인 또는 유해요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이 법 제18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식품의 보관·운반에 있어 안전확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미량영양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출처·원산지가 명확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고 그 고유한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식품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상호작용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산물을 생성해서는 안 된다.
2. 사용되는 미량영양소,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는 정부의 규정 및 이 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8 조 가공식품 영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사전포장된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소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나) 이 법 제18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식품의 보관·운반에 있어 안전확보 요건을 준수할 것

다) 영업 장소의 위생을 확보하고 유지할 것

라) 생산 조직·개인의 지침에 따라 식품을 정확하게 보관할 것

2. 사전포장되지 아니한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식품의 부패·곰팡이 발생 및 곤충·동물·먼지와 그 밖의 오염요인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즉석섭취식품에 사용하는 식기 및 식품용기는 사용 전에 세척 또는 소독할 것

다) 식품의 원산지과 생산일자에 관한 정보를 갖출 것

#### **제 4 절 선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하는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 **제 39 조 건강보호식품 생산시설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이 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 18 조, 제 31 조 및 제 32 조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의 안전 확보 요건과 식품의 보관·운송 시 안전 확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건부의 지침에 따른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 40 조 선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하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이 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 18 조, 제 31 조 및 제 32 조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의 안전 확보 요건과 식품의 보관·운송 시 안전 확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국제식품표준(IFS Food), 국제 식품안전 표준(BRCGS Food Safety), 식품안전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그 밖의 선진 식품안전관리체계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이 조 및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적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 5 절 식음료 서비스 영업시설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

##### **제 41 조 식음료 서비스 영업시설의 조리·영업 장소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조리실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과 가공된 식품 간에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2. 생활용수 기술규정에 적합한 깨끗한 물을 충분히 갖춘다.
3. 위생이 확보된 쓰레기·폐기물 수거 및 보관 용기를 갖춘다.
4. 점포 및 조리실 구역의 배수로는 막힘 없이 소통되어야 하며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5. 식당은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며 채광이 충분하여야 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며, 곤충 및 유해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식품 보관 설비, 화장실, 손 씻는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쓰레기를 매일 깨끗이 수거·처리한다.
7. 집단급식소를 둔 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제 42 조 식음료 서비스 영업시설의 조리·영업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생식품용과 조리된 식품용의 기구 및 용기를 따로 갖춘다.
2. 조리·가공 기구는 위생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식기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깨끗이 세척되어 건조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4.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의 건강, 지식 및 실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제 43 조 식품의 조리·보관에 있어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사용하는 식품 및 식품원료는 출처가 명확하고 안전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며, 음식물 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하여야 한다.
3. 진열·판매하는 식품은 유리 진열장 또는 위생적인 보관 설비 안에 두어 먼지, 비, 햇빛 및 곤충·유해동물의 침입을 막아야 하며, 지면보다 높은 탁자 또는 진열대 위에서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 **제 6 절 길거리 음식 및 집단급식 제공 장소에 대한 안전확보 요건**

##### **제 44 조 식품 보관장소의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유해물질 발생원 및 오염원과 격리되어야 한다.
2. 식품위생안전이 확보된 탁자, 선반, 진열대, 기구 위에서 진열·판매되어야 한다.

##### **제 45 조 길거리 음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 제공자의 원료, 식기, 식품 용기 및 종사자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

1. 음식 조리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식품안전이 확보되고 출처·원산지가 명확하여야 한다.
2. 생활용수 기술규정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재는 안전·위생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식품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4. 식품을 집거나 떨어낼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조리된 식품을 손으로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5. 식품은 덮개로 덮어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6. 햇빛, 비, 먼지, 곤충 및 유해동물을 차단하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영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식품안전 지식을 갖추고 개인위생을 실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른 감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8. 길거리 음식 영업 및 집단급식 제공을 하는 조직·개인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가) 필요한 경우 이력추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 증빙서류, 기록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형태로 원료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보관할 것

나) 식품안전 확보 서약을 이행하고, 길거리 음식 영업 및 집단급식 제공에 관한 개인·조직의 정보와 영업 장소를 해당 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할 것.

#### **제 46 조 길거리 음식 및 집단급식 제공의 관리 책임**

1. 정부는 길거리 음식 영업 및 집단급식 제공에 있어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길거리 음식 영업 및 집단급식 제공 활동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 **제 7 절 식품영업의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

##### **제 47 조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의 발급 대상·요건 및 취소**

1. 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영업의 유형별로 적합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갖춘 것

나) 기업등록증 또는 가구사업자등록증에 식품영업 업종을 등록할 것.

2. 식품안전 요건 적합 인증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의 발급 면제 대상, 인증서의 취소 사유 및 취소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 48 조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의 발급·갱신·변경·보완에 관한 서류, 절차 및 권한**

1. 정부는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의 발급·갱신·변경·보완에 관한 서류, 절차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식품안전 적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 6 장 식품 시험, 식품안전 위해분석,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차단 및 수습**

#### **제 1 절 식품 시험**

##### **제 49 조 식품안전 시험기관**

1.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시험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시험 결과를 제공한다.

가) 식품영업 조직·개인 또는 그 밖의 관계 조직·개인의 필요에 따른 경우로서, 조직·개인의 제품공표등록 및 적용표준 공표 활동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 감독·감사·검사·식중독 처리 및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 나)에서 정하는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험 결과를 제공하는 시험기관은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를 위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3. 시험 결과를 제공하는 시험기관은 공개·게시된 가격에 따라 시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수행한 시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진다.
4. 국가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국가 시험기관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가)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에 대한 검체 채취 및 시험을 수행할 것
  - 나) 보건부의 요구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에 대한 기술 지표를 평가할 것
  - 다) 검체 채취 및 시험 활동에 있어 진실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것
  - 라) 시험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포장재의 검체에 대한 시험 결과 및 결론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5.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50 조 식품안전 분쟁의 해결

1. 식품안전에 관한 분쟁은 다음과 같다.
- 가) 제품이 기술규정, 공표하여 적용하는 표준 또는 계약상 합의에 따른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아 상업 활동에서 조직·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 나) 제품이 기술규정, 공표하여 적용하는 표준에 따른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물질적 손해 또는 건강상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식품영업 조직·개인과 소비자 및 관련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 다) 식품영업 조직·개인과 감독·감사·검사 결과 사이의 분쟁.
2. 식품안전 분쟁의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
  - 나) 당사자들이 중재자로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조직 또는 개인에 의한 조정
  - 다) 중재절차 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서 해결.
3. 식품안전 분쟁 해결을 위한 재시험 및 감정은 다음과 같다.

가) 분쟁해결 기관·조직이 지정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갖춘 기관·조직에 시험결과와 관련된 식품안전 분쟁제품의 재시험을 요청한다

나) 재시험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시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 기관·조직은 국가관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식품안전 분쟁제품을 감정하게 한다. 감정결과는 식품안전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결론이 된다.

4. 분쟁 제품의 재시험 및 감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의 합의

나) 제품에 대하여 공표하여 적용하는 표준 및 그에 상응하는 기술규정.

5.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51 조 검체 채취 및 시험·감정 비용**

1. 검사·감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은 검사·감사를 결정한 기관이 지급한다.

2.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검사·감사 결정 기관이 식품영업 조직·개인의 식품안전 법령 위반을 결론지은 경우, 해당 조직·개인은 검사·감사 기관에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을 상환하거나 시험기관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식품의 검체 채취 및 시험을 요청한 조직·개인은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식품안전에 관한 분쟁·이의제기에 있어 검체 채취 및 시험·감정 비용은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결과 식품영업 조직·개인이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개인이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5. 조직·개인의 신청에 따른 식품영업 요건 적합 인증서의 심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체 채취 및 시험 비용은 해당 조직·개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 **제 2 절 식품안전 위해분석**

##### **제 52 조 식품안전 위해분석 대상**

1.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식품
2. 감시를 위한 검체채취 결과 기술규정 위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식품
3. 오염이 의심되는 환경 또는 식품영업시설
4. 관리상 필요에 따라 위해분석을 실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영업시설

##### **제 53 조 식품안전 위해분석 활동**

1. 식품안전 위해분석은 식품안전 위해에 대한 평가, 관리 및 소통 활동을 포함한다.
2. 식품안전 위해평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미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인자군에 속하는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및 검사

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위해도, 그리고 그 위해요소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의 규명

3. 식품안전 위해관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식품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식품안전 위해를 제한하기 위한 해결방안의 시행

나) 음식서비스업 및 그 밖의 식품영업활동에서 식품안전 위해를 제한하기 위한 통제 및 협력

4. 식품안전 위해정보교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또는 식품매개질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식품안전 위해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을 높일 것

나) 식품안전 위해를 통보·예측하고, 식품안전 위해와 식품매개질병에 관한 정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제 54 조 식품안전 위해분석의 책임**

보건부는 이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위해분석을 시행한다.

#### **제 3 절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차단 및 수습**

##### **제 55 조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차단**

1.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징후를 발견한 조직·개인은 신속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통보할 책임을 진다.

2.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차단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의 영업 및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나) 영업 조직·개인 및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 지식과 실천의 교육·홍보·보급

다) 식품영업에 있어 식품안전의 검사·감사

라) 식품오염 위해의 분석

마)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조사·조사연구 및 보관

바) 식품 검체의 보관.

3.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범위에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차단 조치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을 진다.

4. 보건부는 식품안전사고의 감시·예방·차단 프로그램의 시행을 조직하며, 관장 분야에서 베트남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외국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단 조치의 시행을 조직한다.

5. 보건부는 관계 부처·부문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사고 경보체계의 구축을 주관한다.

## 제 56 조 식품안전사고의 수습

1.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나 베트남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한 조직·개인은 신속한 수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보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사고의 수습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식중독, 식품매개질병 또는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밖의 인체 건강·생명 위해 상황의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응급처치·치료할 것
  - 나) 식중독 사건을 조사하고 식중독·식품매개질병의 원인을 확인하며, 중독 또는 질병 전파를 일으킨 식품의 이력을 추적할 것
  - 다) 영업을 정지하고, 시장에 유통 중인 중독·질병 유발 식품을 회수·처리할 것
  - 라) 식중독 및 식품매개질병에 관하여 관계 조직·개인에게 통보할 것
  - 마) 식중독 및 식품매개질병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
3.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범위에서 식품안전사고 수습 조치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을 진다.
4. 보건부장관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가) 식품안전사고의 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 나) 관계 부처·부문과 협력하여, 베트남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의 차단 조치 시행을 주관할 것
5. 식품을 공급하여 식중독을 유발한 조직·개인은 중독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민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4 절 식품 이력추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의 회수 및 처리

### 제 57 조 식품 이력추적

1. 식품 이력추적은 진실성·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진정성과 검증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물품의 유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관세·상거래·조세·무역구제에 관한 법령 및 관련 법률의 그 밖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의 출처 확인에 있어 권한 있는 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식품 이력추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
  - 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나) 자신이 취급하는 식품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3. 식품 이력추적 대상 식품을 영업하는 조직·개인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이력추적을 시행할 식품 로트를 확인하고 통보할 것

나) 식품 판매대리점에게 해당 식품 로트의 제품수량, 실제 재고 및 시장 유통 중인 수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

다) 식품이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회수 계획 및 처리 조치를 종합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보고할 것

4. 식품 이력추적은 '한 단계 이전-한 단계 이후'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 정부가 정하는 이력추적 방식에 따라 식품의 생산·가공·공급망에서 이전 영업시설과 다음 영업시설을 감시·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식품 이력추적 방식은 전통적인 기록 또는 포장·표시에 부착하는 식별번호, 바코드, QR 코드 및 디지털 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실시한다.

6. 정부는 식품군의 규모·특성 및 시기별 영업여건에 부합하도록 이력추적 방식과 정보, 식품 이력추적의 디지털기술 적용 단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 58 조 식품 이력추적 식별코드**

1. 식품 이력추적에 있어 식별코드는 물품 식별코드(제품, 화물 로트)와 장소 식별코드(영업시설, 보관창고)를 포함하며, 국내외 식품공급망에서 고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식별코드의 구조와 관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식품영업 조직·개인은 국가표준, 승인된 국제표준 또는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별코드를 스스로 생성하거나 사용 등록할 것

나) 식품의 각 로트에는 출고 또는 공정 인계 시 데이터의 기록과 연계를 위하여 고유한 로트 식별번호를 부여할 것.

3. 정부는 식별코드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 59 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회수 및 처리**

1. 보건부장관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폐기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 **제 60 조 식품안전 업무 수수료**

1. 식품안전 업무 수수료의 부과액, 부과·납부제도는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다만, 식품안전 업무 수수료의 관리와 사용은 제 2 항에 따른다.

2. 식품안전 업무 수수료 징수기관은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징수활동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3. 정부는 식품안전 업무 수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 7 장 국가관리

### 제 1 절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 제 61 조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의 책임

1. 정부는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2. 보건부는 정부에 대하여 식품안전 국가관리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및 각 부·부급 기관은 그 임무와 권한의 범위에서 보건부와 협력하여 식품안전 국가관리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범위에서 식품안전 국가관리를 수행한다.

### 제 2 절 식품안전에 관한 감사·검사 및 위반행위 처리

#### 제 62 조 식품안전 감사

1. 식품안전에 관한 감사는 감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정부는 식품안전 확보에 있어 각 부 및 부급 기관의 식품안전 감사 인력과 그 밖의 일부 인력 간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 63 조 식품 점검의 책임

1. 보건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영업 및 광고에 대한 점검을 조직·시행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범위에서 식품의 영업 및 광고에 대한 점검의 시행을 조직한다.
3. 정부는 전문분야 점검 활동에 있어 식품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 64 조 식품안전 점검의 원칙

1. 식품안전 점검의 원칙은 전문분야 점검 활동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칙 외에, 식품안전 점검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점검 대상 기관 및 식품영업시설과 관련된 정보·자료·검사 결과의 비밀을 보호할 것

나) 식품영업시설을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

다) 위해평가 과정의 결과, 시험 결과 데이터, 식품안전 상실 사고에 관한 정보, 감시 결과, 이전의 감사·검사를 통한 식품영업시설의 식품안전 규정 준수 이력에 근거하여 검사 대상 업소를 선정할 것.

#### 제 65 조 점검의 형식, 기한 및 빈도

1. 식품 점검의 기한, 순서 및 절차는 전문분야 점검 활동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정부는 연례 식품안전 검사의 형태와 실시 주기, 식품안전 위반이 발견된 경우 또는 식품원료, 식품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 및 식품향료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남용되어 유해물질이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의 검사에 관하여 정한다.

#### 제 66 조 점검단의 임무와 권한

1. 점검 대상자에게 정보, 서류, 자료, 제품, 물품의 제공 및 검사용 검체 채취를 요구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처리한다.

2. 식품안전 점검 과정에서 점검단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가) 식품을 영업·광고하는 조직·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규정에 따라 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 항에서 정하는 자료의 사본 제공을 요구할 것

나) 필요한 경우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채취한 경우 점검단이 제공한 서류·자료와 비교하여 시험결과가 적합 또는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도록 시험기관에 요구할 것

다) 시장에서의 점검 과정에서 식품을 봉인하고, 점검 대상자에게 부적합 식품의 영업 일시 중지 및 부적합 내용의 식품 광고 일시 중지를 요구할 것. 이 경우 식품을 봉인하거나 부적합 식품의营业을 일시 중지하거나 광고를 일시 중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식품관리기관에 보고할 것

라) 공표하여 적용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식품을 영업·광고하는 조직·개인에게 수습·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

마) 식품관리기관에 그 권한에 따른 처리를 건의할 것. 검사의 요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급의 전문분야 검사 권한이 있는 국가관리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자에게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것

바) 점검을 실시할 때 이 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점검의 원칙을 준수할 것

사) 검사 결과를 식품관리기관에 정확하고 적시에 보고할 것.

3.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하고,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며,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4. 전문분야 검사 권한이 있는 기관·단위의 장에게 전문분야 검사 결과를 보고한다.

5. 범죄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점검단장은 전문분야 검사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범죄 징후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서류를 형사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도록 한다.

6.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관 서류·자료를 인계한다.

7.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 제 67 조 식품안전 검사 활동의 중복 처리

장관, 부급기관의 장 및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법」 제 58 조제 2 항에 따른 식품검사와 감사활동 간의 중복·반복을 처리하도록 지휘·협력한다. 다른 기관의 전문검사활동과 중복·반복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급 국가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토·결정하도록 한다.

#### **제 68 조 식품안전 위반행위의 처리 및 식품안전 위반 시 최고 처벌 수준**

1. 식품안전 법령을 위반한 식품영업 조직·개인은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행정위반 처리를 받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받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고 그 결과를 수습하여야 한다.
2. 직위·권한을 남용하여 이 법의 규정 또는 식품안전에 관한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받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최고 과태료는 개인에 대하여 10억 동(VND), 조직에 대하여 20억 동(VND)으로 한다.
4. 정부는 이 조에서 정하는 식품안전 분야의 행정위반 행위, 처벌 형식 및 처벌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 8 장 시행 규정**

#### **제 69 조 시행 효력**

1.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및 계획(기획)과 관련된 11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제 28/2018/QH14호 제1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정부는 .....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의 시행을 지도한다.

#### **제 70 조 시행 일정**

보건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체계와 연계되는 식품안전 정보체계를 구축·완비한다.

#### **제 71 조 경과 규정**

1.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국가관리 업무 수행 시험기관 지정 결정 및 활동 요건을 충족한 검증시험기관 공표 결정은 해당 결정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